

의안번호	제 1047 호
의 결 연 월 일	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경제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지 사
제출연월일	2022년 6월 3일

법무혁신담당관 심사를 마침

충청북도경제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1047
----------	------

제출연월일 : 2022년 6월 3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종래에 '충청북도경제정책심의위원회'에서 통합 운영하여 온 '지역경제협의회', '소비자정책위원회', '유통분쟁조정위원회' 등 각종 경제 관련 위원회를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개별조례에서 구성 운영하기로 기능을 정비함에 따라 실효성이 없어진 「충청북도경제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충청북도경제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3. 의안전문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 없음

5. 관계법령 발취 : 붙임

6. 비용추계서 : 붙임

충청북도 조례 제 호

충청북도경제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충청북도경제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발취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나.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

□ 충청북도경제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경제 활성화, 지방공공요금의 조정, 물가안정 시책, 유통산업간의 분쟁조정, 유통·물류시책, 소비자 권익증진 시책, 소상공인 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경제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충청북도경제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2. 지역물가안정을 위한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3. 지방공공요금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유통산업간의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5. 물류시책에 관한 사항
6. 소비자 권익증진 및 소비생활 등에 관한 주요시책
7. 전자거래 촉진에 관한 사항

8. 소상공인 보호 및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이상 25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소비자 권익증진, 유통, 물류, 물가, 지역경제, 소상공인과 관련된 실·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지역경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언론인, 물가 관련 기관·단체의 장, 노동자단체 대표 및 시민단체 대표

3. 상공회의소의 임원, 소비자단체대표,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물류정책·유통단지입지정책 또는 물류표준화추진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5. 정보통신 또는 전자거래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6. 소상공인과 관련된 기관 관계자, 전통시장대표 및 슈퍼마켓대표

④ 위원회의 위원중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위촉직 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할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위원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회의를 갈음 할 수 있다.

제6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 다만,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지역경제활성화대책분과위원회

2. 물가대책분과위원회

3. 유통산업분쟁조정분과위원회

4. 유통·물류정책분과위원회

5. 소비자정책분과위원회

6. 전자거래정책분과위원회

7. 소상공인경쟁력분과위원회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제통상국장이 되고 분과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기관·단체의 장 등이 추천한 실무급 인사와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④ 분과위원회가 의안을 심의·의결한 때에는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것으로 본다.

⑤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의견 청취) ① 위원회(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는 필요시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 당사자 등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의견청취 및 자료제출요구는 위원회(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0조(심의안건 제출) ①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분과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회의 1주일 전까지 위원회 간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제출된 안건에 관하여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인에 대하여는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수당과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충청북도경제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종래에 '충청북도경제정책심의위원회'에서 통합 운영하여 온 '지역경제협의회', '소비자정책위원회', '유통분쟁조정위원회' 등 각종 경제 관련 위원회를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개별조례에서 구성 운영하기로 기능을 정비함에 따라 실효성이 없어진 「충청북도경제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2. 비용 발생 요인

- 충청북도경제정책심의위원회 폐지에 따른 신규 위원회 운영
 - 지역경제협의회, 소비자정책위원회,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소상공인위원회

3. 관련조문

- 「충청북도 지역경제협의회 조례안」 제3조(구성)
- 「충청북도 소비자 기본조례안」 제29조(위원회의 구성 등)
- 「충청북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안」 제3조(구성)
- 「충청북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제10조(위원회의 구성)

4. 추계결과

- 협의회 참석위원 연간 수당 산출내역
 - 지역경제협의회 : 130,000원*14명*연1회 = 1,820천원
 - 소비자정책위원회 : 130,000원*10명*연3회 = 3,900천원
 - 유통분쟁조정위원회 : 130,000원*15명*연1회 = 1,950천원
 - 소상공인위원회 : 130,000원*9명*연1회 = 1,170천원

※ 출석수당 : 기본수당(2시간 이내) 100천원, 초과수당(2시간 초과) 30천원
- 산출과정 : 연간 8,840천원, 2022년부터 향후 5년간 44,200천원 소요
- 재원조달방안 : 도비 100%

5. 연도별 비용추계서(세출)

(단위: 천원)

구 분	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참석위원 수당	44,200	8,840	8,840	8,840	8,840	8,840

6. 작성자 : 경제통상국 경제기업과장 정 선 미(220-3210)